

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

1.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- 1)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72호(2022.12.21.)에 따라 학생인건비 사용기준금액 상향 조정
 - 2023. 1. 1. 시작되는 과제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

변경 전	변경 후
1. 학사과정(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): 월 <u>1,000,000</u> 원	1. 학사과정(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): 월 <u>1,300,000</u> 원
2. 석사과정: 월 <u>1,800,000</u> 원	2. 석사과정: 월 <u>2,200,000</u> 원
3. 박사과정: 월 <u>2,500,000</u> 원	3. 박사과정: 월 <u>3,000,000</u> 원

- 2)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삭제에 따라 별첨의 ‘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’ 삭제

2. 개정 지침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 학생인건비는 지급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 1. 학사과정: 월 <u>100만원</u> 2. 석사과정: 월 <u>180만원</u> 3. 박사과정: 월 <u>250만원</u>	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 학생인건비는 지급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 1. 학사과정: 월 <u>130만원</u> 2. 석사과정: 월 <u>220만원</u> 3. 박사과정: 월 <u>300만원</u>	개정 3p
[신설]	부 칙(2023. 2. 9.)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 13조는 2023. 1. 1. 시작되는 과제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.	개정 5p